

##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3년 11월 28일
- 나. 회부일자 : 2003년 11월 29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2003년 12월 22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지방세과장 신 기 호)

#### (1)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3년이 2003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감면조례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감면축소
  -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11조) :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안 제26조) : 과세면제에서 100분의 50 경감으로 축소
-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는 규정에 대하여 근거법령을 명확히 함  
(안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5조)
- 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안 제8조)
- 전용면적 40㎡ 이하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조항 신설(안 제10조)
- 외국인투자기업 중 사업의 양수 등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안 제22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에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감면조항 신설(안 제2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장 재 영)

이번 개정조례안은 한시조례인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감면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음.

-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0조 본문 및 안 제15조에 대한 의견임.

이들 개정안은 인용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거나, 그 동안 개정·폐지되어 명칭이 변경된 인용 법령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안 제8조에 대한 의견임.

제8조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음. 상업용 문화재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해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문화재로 지정 받은 부동산도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하겠음.

○ 안 제10조제1호에 대한 의견임.

제10조에서는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무기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 안 제11조에 대한 의견임.

제11조에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3년 간으로 단축하자는 것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IMF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으로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 주택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5년 동안 미분양 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세제 지원기간을 단축조정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됨.

○ 안 제22조에 대한 의견임.

제22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15년 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여기에다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서도 10년 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하자는 것임.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조항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안이라 판단됨.

○ 안 제24조에 대한 의견임.

제24조에서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장이나 법인의 본점으로 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 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감면기간에 차등을 주자는 것임.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이외에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자는 개정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이라 생각함.

○ 안 제26조에 대한 의견임.

제26조에서는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50%로 경감하자는 것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세형평상 과제전환이 타당하다고 보나, 개정안은 적자상태가 누적된 농업기반공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50%를 경감하는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됨.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과감히 감면을 축소·폐지하고 국가정책목적을 위한 신규 감면은 최대한 억제하며,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을 축소하고, 특정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

---

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는 감면세목에서 배제토록 하는 감면조정의 기본방향에 따른 것이라 판단되며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광주광역시서구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조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10조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영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한다.

제11조 중 “5년 간”을 “3년 간”으로 한다.

제15조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 간 전액을 면제하고,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간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간 전액을 면제하고,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간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한다.

-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 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 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조 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 ----- ----- -----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생략) 1~4. (생략)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7. (생략)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 6~7.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생략)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광주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생략) ②(생략)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 ----- 부동산 2. ----- ----- 부동산 3.(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총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 ----- ----- 주택 번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 ----- -----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 ----- ----- -----

현행	개정안
<p>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3. (생략)</p>	<p>----- --- 2~3. (현행과 같음)</p>
<p>제1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및 광주광역시서구세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u>5년</u> 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p>	<p>제1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 ----- ----- 3년 간 ----- -----</p>
<p>제15조(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u>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5조(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u>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u> ----- ----- ----- ----- ----- ----- ----- ----- ----- ----- ----- ----- ----- ----- ----- ----- ----- ----- ----- ----- ----- -----</p>
<p>제22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 간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p>	<p>제22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p>
<p>&lt;신설&gt;</p>	<p>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 간 전액을 면제하고,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24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외에 지역으로 이전(광역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p> <p>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p>	<p>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간 전액을 면제한다.</p> <p>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간 전액을 면제하고, 동조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간 전액을 면제한다.</p> <p>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24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p> <p>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p>

현행	개정안
<p>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p> <p>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p> <p>제26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 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 -----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 ----- ----- ----- ----- -----</p> <p>제26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 ----- ----- ----- -----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